

보 수 규 정

보수규정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승진 시 호봉확정) ① 승진하는 경우에 승진직급에서의 호봉은 별표13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한다.

②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일에 승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강임·강등 시 호봉확정) ① 강임·강등하는 경우, 강임·강등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은 별표 13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강등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강등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② 강임·강등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서 강임·강등되는 직원이
강임·강등일 현재로 강임·강등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강임·강등일에 강임·강등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강임·강등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강등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직무수당 지급율 및 지급금액란 중 “20%”를 “15%”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7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8조 관련)

임·직원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이사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5,196,300	4,957,800	2,670,800	2,511,700	2,385,400	2,097,400	1,916,000	1,774,000	1,611,500	1,458,100	1,302,300	
2					2,450,600	2,185,000	1,993,900	1,847,200	1,682,300	1,522,100	1,364,100	
3					2,541,700	2,273,700	2,075,200	1,925,100	1,755,700	1,593,100	1,430,600	
4					2,631,200	2,365,800	2,161,100	2,004,200	1,833,600	1,671,200	1,508,800	
5					2,718,100	2,471,800	2,260,700	2,099,100	1,925,000	1,759,300	1,595,800	
6					2,816,900	2,564,800	2,353,600	2,186,300	2,007,500	1,837,300	1,669,000	
7					2,914,400	2,665,900	2,445,200	2,273,200	2,085,400	1,909,100	1,731,700	
8					3,010,600	2,764,300	2,537,800	2,355,200	2,161,400	1,976,100	1,792,800	
9					3,106,600	2,865,000	2,627,600	2,434,400	2,235,100	2,042,700	1,853,600	
10					3,201,600	2,960,900	2,712,000	2,513,500	2,306,000	2,110,000	1,913,000	
11					3,297,400	3,053,500	2,794,900	2,584,700	2,373,900	2,171,100	1,971,900	
12					3,390,900	3,137,300	2,871,600	2,655,200	2,442,100	2,233,400	2,029,500	
13					3,476,300	3,219,200	2,948,000	2,724,700	2,503,300	2,292,300	2,083,700	
14					3,556,000	3,298,400	3,021,100	2,793,100	2,568,000	2,353,600	2,140,400	
15					3,631,300	3,377,300	3,095,100	2,859,800	2,632,600	2,413,300	2,194,200	
16					3,706,200	3,448,300	3,159,800	2,920,200	2,690,200	2,467,500	2,251,900	
17					3,774,600	3,514,900	3,222,400	2,978,900	2,747,000	2,524,000	2,305,800	
18					3,840,300	3,580,000	3,282,300	3,035,300	2,801,100	2,576,000	2,354,100	
19					3,900,500	3,640,800	3,341,300	3,089,700	2,851,600	2,625,400	2,403,600	
20					3,961,900	3,703,300	3,399,000	3,146,100	2,909,200	2,680,600	2,457,600	
21					4,016,400	3,759,500	3,452,100	3,217,100	2,956,400	2,703,100	2,501,300	
22					4,067,300	3,810,600	3,501,600	3,242,700	2,999,000	2,771,400	2,544,900	
23					4,113,200	3,861,000	3,548,800	3,288,700	3,043,700	2,812,800	2,587,400	
24					4,159,600	3,907,700	3,594,500	3,331,300	3,086,200	2,853,800	2,622,700	
25					4,199,000	3,954,600	3,640,000	3,374,500	3,128,200	2,893,600	2,663,500	
26					4,241,800	3,996,800	3,683,500	3,415,500	3,163,500	2,927,900	2,689,500	
27					4,280,000	4,037,600	3,720,100	3,453,300	3,200,100	2,957,000	2,719,000	
28					4,316,000	4,076,100	3,759,100	3,491,200	3,233,100	2,991,400	2,752,500	
29					4,351,700	4,110,000	3,794,400	3,524,200	3,268,500	3,022,100	2,780,300	
30					4,386,200	4,144,900	3,827,400	3,559,700	3,300,400	3,051,600	2,808,600	
31							4,178,600	3,859,100	3,590,500	3,332,000	3,082,200	2,838,100
32							4,209,900					

[별표 13]

승진 시 호봉 확정표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직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 확정된 직원이 승진 전 직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직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확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1조의2(승진 시 호봉확정) ①</u> <u>승진하는 경우에 승진직급에</u> <u>서의 호봉은 별표13이 정하는</u> <u>바에 의하여 확정한다.</u></p> <p><u>②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u> <u>확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직</u> <u>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u> <u>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u> <u>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u> <u>인 경우에는 승진일에 승진</u> <u>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u> <u>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u> <u>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u> <u>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직급에</u> <u>서의 호봉확정으로 이를 같음</u> <u>한다.</u></p> <p><u>③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u> <u>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u> <u>간(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u> <u>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u> <u>말한다)은 승진된 직급에서의</u> <u>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u></p>

<신 설>

다만,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의3(강임·강등 시 호봉확정)

① 강임·강등하는 경우에 강임·강등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은 별표 13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강등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강등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② 강임·강등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서 강임·강등되는 직원이 강임·강등일 현재로 강임·강등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강임·강등일에 강임·강등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
니하며 강임·강등된 직급에서
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같음한
다.

③ 강임·강등되기 전 직급에서
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
기간을 말한다)은 강임·강등
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
에 산입한다.